
지역기반 사회연대경제 혁신허브 사업 공모 계획

2026. 9.





목 차



I. 사업개요	1
II. 공모계획(안)	2
III. 심사·선정	6

<참고자료>

1. 사업 심사기준	8
2. 특별교부세 운영지침	9

I. 사업개요

지역 공동체 중심의 사회연대경제 전달체계를 통합·조정하는 '기능형 허브'를 구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 기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근거: 국정과제 81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1 추진배경

- 지역에서 사회연대경제 활동을 위한 공간 부족으로 창업·성장·협업이 어려워 청년 등 신규 주체의 지역 정착과 지속적인 활동에 한계
- 지역 단위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연대경제 모델을 지속적으로 공동 기획·실행할 수 있는 전달 체계형 공간 부재
 - 지역 내 사회연대경제 조직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나, 협업·연계 체계 부족으로 인해 사업 중복, 자원 분산, 지속성 부족 등의 한계 발생
 - 복합적인 지역문제 해결에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공동체 연대를 결합하는 거점공간 부족

⇒ 지역에서 연대·협력·공동 실행이 작동하는 전달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혁신거점 공간 조성' 필요

2 추진목적

- 사회연대경제 조직·주민·행정·민간기관 등을 연결하여 협력사업과 지역문제해결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지역거점 구축
 - '연대형성-공동기획-공동실행-성과확산'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능별 공간이 결합된 관계·협력 인프라 조성

【참고】 기존 공간 지원 사업과의 비교

구분	기존 공간	혁신 허브
정책 단위	개별 조직·개별 사업 중심	지역 단위 전달체계 중심
사업 방식	유형별 분절 운영	공동기획·공동실행 통합 운영
조직 관계	개별 조직 단독 수행	다수 주체 간 연대·협력
공간 역할	단순 입주·행정 지원	전달체계 기능 작동

II. 공모계획

1 공모개요

□ 지원대상 및 규모

- (사업명) 지역기반 사회연대경제 혁신허브 조성사업
- (총사업비) 125억(특별교부세 100억원, 지방비 25억원)
※ (특별교부세) 시설 및 인프라 구축비 / (지방비) 경상경비 매칭
- (지원대상) 기초 지방정부(시·군·구)
- (선정규모) 5~8개소
- (지원형태/규모) 특별교부세 / 개소당 최대 20억원 지원
- (지원조건) 특별교부세의 25% 이상 지방비 부담(특교세:지방비 = 4:1 매칭)

□ 선정 우대사항(가점)

- (1점)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 지역(행안부 고시 제2021-66호)
- (1점) 사회연대경제 조례가 있거나, 전담조직(부서)이 있는 경우

2 지원내용

□ 특별교부세

- 시설 및 인프라 구축비(신축 또는 리모델링 비용) 지원

< 지원 규모 산정 방식 >

- (신축) 20억 지원
 - (리모델링) 대상 면적에 따라 지원(20억원 상한)
 - (공사비 단가) 리모델링 대상 연면적 m²당 150만원
 - (설계·감리비) 공사비의 10~15% 이내
 - (보정) 노후도에 따라 조정
- ※ 준공·리모델링 후 10년 경과 10%, 20년 이상 20% 공사비 추가

□ 매칭 지방비

- 경상경비 편성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시설비 추가 편성 가능
 -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기획 설계 및 프로그램 추진 등 경상경비* 편성

*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용역비, 민간위탁비, 민간경상보조 등

※ 단 사업 부지 매입비 등 사전 준비 사항은 편성 불가

3 추진방향

□ 추진방안

- (추진절차) ^(先)민관협의체 구성·운영 및 사회연대경제 운영모델(안) 마련
→ ^(後)기획설계 및 공간 조성 추진
 - 사전 협의체를 통해 도출된 사회연대경제 운영모델(안)과 수요분석 결과를 기획 설계 및 최종 공간 설계에 필수적으로 반영
- (설계방향) 지역 과제 해결을 위한 조직 간 연대 구조 중심의 설계
- (기능정립) 지역 사회연대경제 전달체계의 허브로서 ‘중간지원기능’ 강화
 - ※ (예시) 협력의제 발굴, 컨소시엄 구성, 공공자원 연계 및 민간 자본 매칭 등

□ 핵심기능

기능	주요 내용
① 연결	· 지역 사회연대경제 조직 간 네트워크 구축 · 주민·행정·민간기관 연계, 협업 파트너 발굴
② 성장 지원	· 상담·교육·컨설팅, 공동 사무·회의 공간 제공, 창업·사업화 지원 · 기업 입주, 청년 체류 지원 등
③ 지역문제 해결	· 돌봄·청년·환경·먹거리 등 지역 현안 해결 프로젝트 운영 · 주민 참여형 실험사업 추진
④ 성과 확산	· 공동 브랜드·전시·판매, 판로확대, 우수사례 공유 · 지역 내외 협력 확대

⇒ 혁신허브를 중심으로 **공공-민간-주민이 참여하는 협치 구조 상시화**

□ 공간구성 ※ 지역별 운영모델에 맞춰 자유롭게 구성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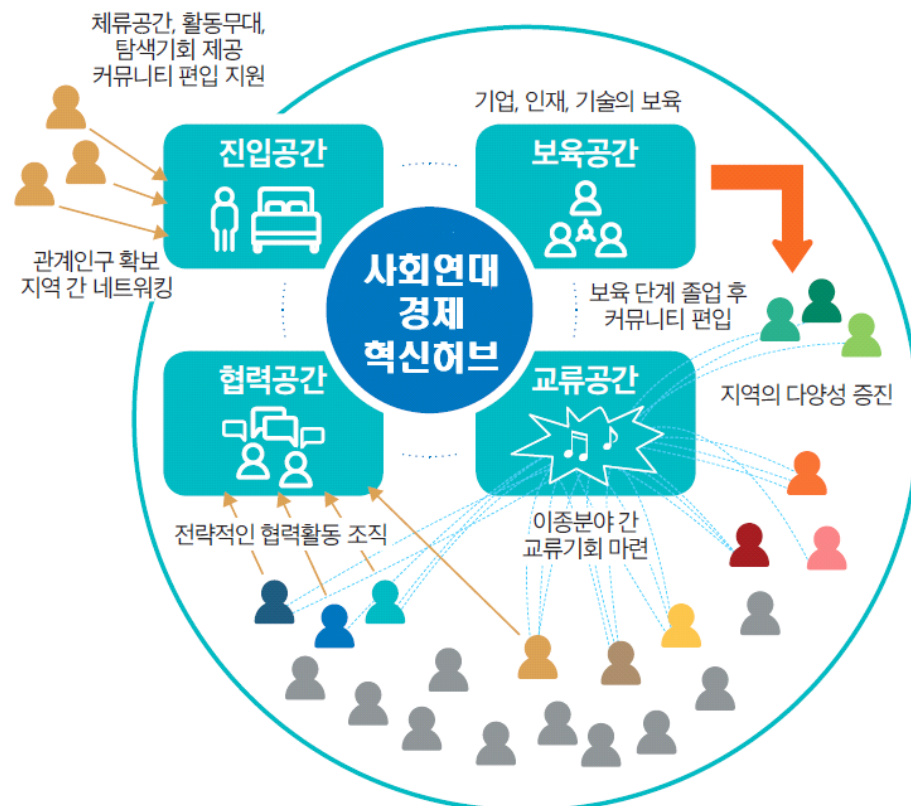
- (교류공간) 카페, 광장, 라운지 등 일상적 방문이 가능한 개방형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심리적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일상적 방문 유도
 - 성과를 대외적으로 공유하는 전면부(Showcase) 역할 수행
 - 다양한 지역 주민이 사회연대경제 활동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공간으로 구성
- (주거공간) 기업 및 외지 청년 등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단기 체류 시설 조성**
- (창업공간)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인큐베이팅**과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입주 사무공간**(전용 공간 비중 최소화, 공용·공유 공간 비중 확대하여 공간 효율화)
- (협력공간) 지역 주체 간 **공동 R&D** 및 **리빙랩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협업 특화 공간** 구축

⇒ **지역 특성 및 문제 해결 시나리오 기반의 기능적 공간 차별화**

【참고】 혁신허브 공간 활용 모습(예시)

구분	연대가 실제 사업으로 전환되는 출발점	지역 문제 해결의 실험실	성과를 보여주는 창, 확산의 출발점
공간	· 협력공간 (회의·워크숍형 가변공간)	· 협력·육성 공간 (공유 주방, 파일럿 서비스 ·테스트베드형 공간)	· 교류공간 (전시,편집숍, 팝업·홍보 공간)
상황	· 돌봄·먹거리·환경 등 하나의 지역 문제를 두고 -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지자체 담당자가 함께 모여 공동사업 컨소시엄을 기획하고 역할을 나눔	· 주민 수요를 반영한 공동급식 돌봄 서비스 지역 먹거리 가공·판매 모델을 파일럿 형태로 실제 운영	· 공동사업 성과를 전시팝업 판매 체험 프로그램으로 공개 - 주민과 외부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유입
효과	· 공동기획 → 공동신청 → 공동실행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짐	· 사업계획에서 끝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실행 → 수정 → 고도화	· 사회연대경제를 ‘어려운 정책’이 아니라 생활 속 서비스와 경험으로 인식

공간 개념도



□ 신청 전 추진 절차

- (협약체 구성) 공간 활용 주체인 지역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참여하는 민관협약체를 구성하고, 협약체 주도로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서 작성

〈민관협약체 구성과 기능〉

- ① 구성: 지방정부, 앵커 조직, 사회연대경제 지역 관계자 등
- ② 기능: 사업 기획 및 발굴·관리, 참여 조직 발굴 및 지원 등 사업 총괄
- ③ 민관협약체 구성은 사업 대상지 선정 이후 사업 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

- (운영모델 기획) 기획 단계부터 민관협약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연대경제 운영모델을 수립, 핵심 기능 및 최적 공간 도출
- (사전 절차 이행)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 제·개정, 전담 조직 구성, 주민 의견 수렴 등 사전 행정 필요사항 검토 및 수행

Ⅲ. 심사·선정

1 공모일정

단계	일정	내용
공고	~ 10.23.(금)	시·도에서 취합 제출
서류 심사	10월 末	최종 선정의 2~3배수 선정
현지 실사	11월 初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발표 심사	11월 初	PT 발표 및 질의응답
선정 공고	11월 中	최종 사업자 선정 발표

2 심사방법

□ 서류심사

- (심사방식) 심사 평가표에 따라 평가위원별 사업계획서 검토

- (선정규모) 최종 선정 규모의 2~3배수 내외로 선정
※ 평가위원 배점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 반영
- (결과통보) 공문 통보(행정안전부 → 시·도 → 시·군·구)

□ 현지실사

- (실사대상)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초 지방정부
- (실사내용) 사회연대경제 운영모델 브리핑*, 예비 운영조직·참여단체 및 관계자(지자체, 지역주민 등) 면담 및 예정공간 현장 점검 등 진행
* (수행) 민관협의체 대표가 현장 브리핑 실시
- (실사인원) 내·외부 심사위원 3~4명으로 구성

□ 발표심사

- (발표대상) 서류심사 합격 기초 지방정부
- (심사방법) PT 발표(15분)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15분)으로 진행

□ 선정·공고

- (순위결정) 발표심사 결과만을 반영하여 고득점순으로 최종 선정
- (결과공고) 해당 기관에 공문으로 개별 통보

3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제출서류 ※ 전자파일(스캔본, 작성파일) 제출

- 지역기반 사회연대경제 혁신허브 조성사업 계획서 1부(30쪽 이내)
- 가점 관련 서류(사회연대경제 관련 조례 또는 전담 조직도)

□ 제출기한: 2026. 10. 23.(금) 까지

□ 문의: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044-205-3224, 3225)

참고 1

심사기준

평가 항목	배점	평가 요소
① 사업계획 타당성	20	○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현장 수요 반영 여부 ○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지표의 구체성·지역특색 반영 여부 ○ 사회연대경제 방식이 필요한 이유가 설득력이 있는지
② 사회연대경제 모델 구체성	40	○ 개별 기업·단체 지원이 아닌 공동기획·공동실행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델인지 - 지역 내 다수·다종의 사회연대경제 주체 참여 및 역할 분담 여부 - 다부처·다분야 사업을 연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방안이 있는가 ○ 기존 정부·시장 경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해결 방안 여부 -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기존 해결방식과의 차별성 ○ 자체 수익 창출 등 지속가능한 운영모델 여부 - 기업 ESG, 금융 연계(사회연대금융 등) 등 민간자원 유입방안 확보 여부 ○ 지역 내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여부
③ 공간 후보지 매력·거점역할 가능성	30	○ 사회연대경제 생태계의 상징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가 - 지역 내 거점성, 접근성, 안정성, 의미성, 환경성 등 ○ 디자인성·심미적이며, 사업성·수요를 창출하고, 기능성·사회연대경제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기능 중심 설계가 되어 있는가 - 공간 설계, 리모델링 등 준공 계획의 구체성·현실성 ○ 지역 사회연대경제 핵심콘텐츠 유치 및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여부
④ 실행가능성	10	○ 지방정부-민간-주민 협치 구조 여부 - 공간 참여주체 간 협력의제 발굴, 컨소시엄 구성·조정, 공공자원 연계 및 민간 자본 매칭 등 수행할 역량 여부 ○ 재원 조달계획(지방비 25% 매칭) 및 집행의 적정성 - 지방비 매칭(추가 예산 편성),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지방정부의 추진 의지 여부

※ 가점 항목

- (1점)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 지역(행안부 고시 제2021-66호) ※ '21.10.19. 시행
- (1점) 사회연대경제 조례가 제정되어 있거나, 지방정부 전담조직(부서)이 있는 경우

○ 사업절차

- 사업부서에서는 자치단체의 공모·신청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검토·확정*하고 교부세과에 통보하며, 사업 추진 지도·점검 및 사후 관리 실시
 - * 사업부서에서 사업내용을 확정·승인한 경우에도 '사업계획 검토시 제외사업'에 해당하는 등 부적정 사업인 경우에는 지자체 교부액이 감액되므로 사업계획 검토·확정에 신중
 - ※ 사업부서에서 교부세과에 사업비 교부를 요청할 경우, 선정된 공모 사업의 내용과 지자체의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사업부서는 사후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교부세과에 제출 및 지자체에 안내하고, 계획에 따라 사후관리를 충실히 수행
 - ※ 특정 목적 운영을 주요 내용(요건)으로 하는 공모사업을 계획·선정한 경우, 반드시 특교세 집행 완료 후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후관리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방협력 특교세 공모사업 신청 시 당해 자치단체 지방교부세 담당 부서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제출**

○ 사업계획 검토 시 제외사업

- ① 민간에 지원하는 사업
- ② 소비적인 운영비 지원 사업 ※ 운영비에는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등 포함
- ③ 사업대상지가 공유재산이 아닌 경우 * 단, 자치단체가 임차 등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1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음

○ 특별교부세 제한사항

- ① 특교세 목적상 제한 : △지자체 고유사무가 아닌 사무에 지원하는 사업 제한, △지자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부지나 건축물(시설)에 지원 제한
- ② 특교세 취지상 제한 : △인건비·운영비·행사성 경비 지원 제한, △부지(시설)매입비(보상비) 등 본사업 착공 이전에 필요한 사업 지원 제한
- ③ 법령상 제한 : △민간보조사업 제한, △토목·건축 관련 신설 사업으로서 20억원 이상이 필요한 사업은 설계비 등 예산을 반영한 후 신청